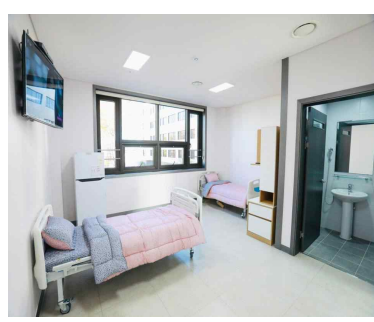

요양원 이용안내서



1. 요양원 소개

기관명	라온요양원	설치일자	2021. 11. 01
급여종류	시설급여	입소정원	99명
시설장	이복자	협력의료	파주의료원 엄내과의원
전화번호	031)934-0073	팩스	031)944-0733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334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3,500원 (1식)		
	간식비 2,000원(오전/오후 2회)		
	상급침실 비용 10,000원 (1박 기준)		
	입원 및 통원치료시 발생하는 치료비		
시설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373.40㎡, 바닥면적 537.62㎡		
  			

구분	2인실	3인실	특수 침실	사무실	상담실	의료실	간호사 실	작업치 료실	식당	조리실
시설	8	28	1	1	1	1	4	1	1	1

구분	화장실	목욕실 세면실	세탁/건 조실	요양보 호사실	자원봉 사자실	미용실				
시설	44	40	1	4	1	1				

입소계약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계약목적 : 효은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1)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3)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4)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계약해지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폐소 처리한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1)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 20% 2)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 12% 3)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 8% 4)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5) 등급 외의 자는 다음과 같은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평가점수, 수가, 평가기준에 의거 입소비용을 차등 부과한다.
이용료납부	1.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공지 후 2주(14일) 내에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 하여야 한다. 2.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3.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비용에 대한 변경 1)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변경절차 1)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급여비용서비스내용 변경에 따른 등급변경 필요성을 보호자에게 고지 → 공단에 서류제출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 실시 → 보호자상담 → 재계약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2.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 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 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②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 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③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 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⑤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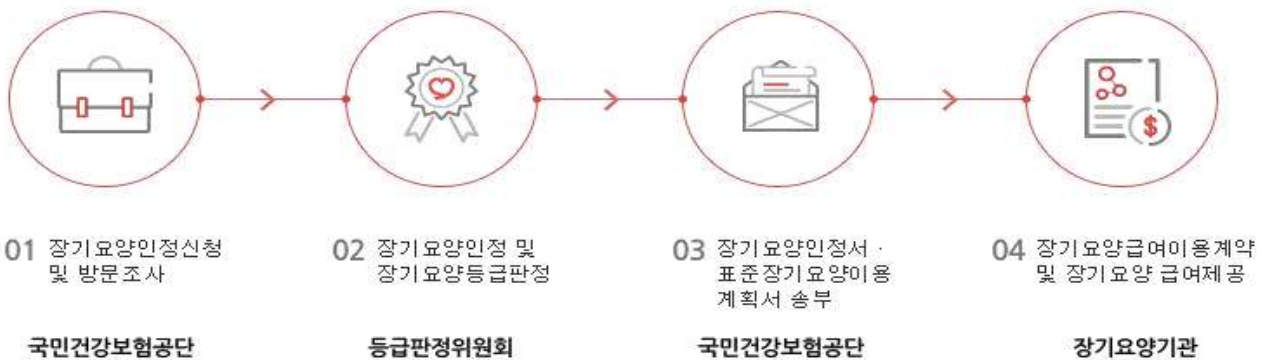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2023년 등급별 일일 이용료 산정표】

(30일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총계(일반)		2,452,500	2,275,200	2,148,6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20%)	490,500	455,040	429,720
	요양급여비용(경감12%)	294,300	273,030	257,820
	요양급여비용(경감8%)	196,200	182,010	171,900
개인 부담비용	일반(20%) 소계	865,500	830,040	804,720
	경감대상자(12%) 소계	669,300	648,030	632,820
	경감대상자(8%) 소계	571,200	557,010	546,900
	식사재료비	1일 3,500 * 3 회 = 10,500		
	간식비	1일 1,000 * 2 회 = 2,000		
	이 · 미용비	무료		

3.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4.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가.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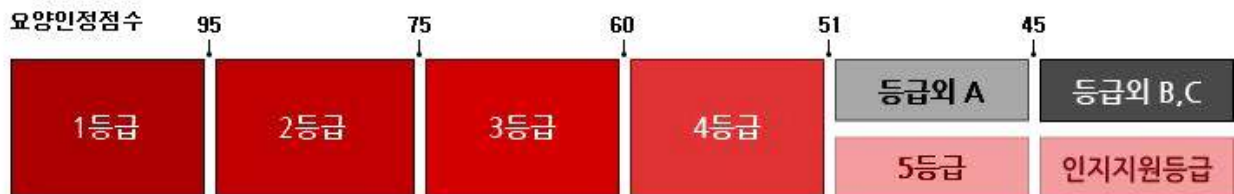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인정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5. 급여서비스 안내

신체활동 지원	1. 세면 도움	1) 세면 도움
	2. 구강청결 도움	1) 칫솔질 2) 의치손질 3) 구강청결(완전구강관리)
	3. 머리감기 도움	1) 머리감기 2) 침상 머리감기
	4. 몸단장 도움	1) 면도 2) 머리단장 3) 손, 발, 청결유지
	5. 옷 갈아입기 도움	1) 옷 갈아입기
	6. 신체청결 도움	1) 몸씻기 2) 전신 및 부분 닦기
	7. 식사 도움	1) 일반식사 2) 경관영양
	8. 체위변경 도움	8. 체위변경
	9. 화장실 이용 도움	1) 변기사용 2) 침상배변·배뇨 3) 기저귀 교환 4) 유치도뇨관
	10. 이동 도움	1) 침상 내 이동 2) 휠체어 이동 3) 보행 돕기
	11. 신체기능 유지증진	1) 관절구축 예방 2) 일어나 앉기, 서기, 보행, 운동 도움 3) 보장구 이용 4) 경구약물 복용
	12. 산책(외출)동행 도움	1) 산책(외출)동행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1. 인지관리 도움	인지관리 지원
	2. 의사소통 도움	의사소통 지원

기능회복훈련	1.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1.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2. 신체기능훈련·기본 동작훈련·일상생활 동작훈련	2. 신체기능훈련·기본동작훈련·일상생활동작훈련
	3.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3.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5. 물리치료	1) 온냉열치료 2) 전기치료 3) 운동치료

1. 관찰 및 측정	1) 건강상태 확인	(1) 활력징후 측정 (2) 혈당 측정
2. 건강 관리	1) 기초건강 관리	(1) 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2) 투약관리	(1) 약물 관리 (2) 투약이행관리 (3) 경구 투약 (4) 비위관·위관 투약 (5) 외용제 도포 및 좌약 삽입 (6) 인슐린 주사
	3) 감염간호	(1) 감염예방 (2) 손씻기 (3) 소독관리 (4) 감염성 폐기물 분류 및 수거
	4) 관절구축 예방	(1) 능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2)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5) 치매돌봄	(1) 치매약물 관리
	6) 인지훈련	(1) 인지기능 평가 (2)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7) 의료기관 의뢰 등	(1) 촉탁의 진료지원 (2) 의료서비스 진료지원

3. 간호관리	1) 욕창관리	(1) 욕창예방 (2) 욕창간호
	2) 영양관리	(1) 영양상태 확인 (2) 위루관(PEG-tube) 관리 (3) 비위관 관리 및 경관영양 식이제공
	3) 배설관리	(1) 배뇨훈련 (2) 유치도뇨관 관리 (3) 관장 (4) 회음부 간호
	4) 통증관리	(1) 통증사정 (2) 온·냉요법
	5) 호흡기 간호	(1) 산소요법 (2) 흡인간호
	6) 구강간호	(1) 구강간호
	7) 당뇨발관리	(1) 당뇨 관리 (2) 상처관리
4. 응급 서비스	응급간호	(1) 질식사 응급대처 (2) 경련시 응급대처 (3) 화상시 응급대처 (4) 낙상시 응급대처 (5) 뇌졸중 전조증상시 응급대처 (6) 심장마비시 응급대처
5. 임종관리	임종간호	(1) 임종간호

6. 일일 생활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6:00 ~ 7:00	기상 식사준비	개인위생 및 청결관리 / 아침 식사준비						
7:00 ~ 8:40	아침식사	개인별 맞춤영양식 및 치료식 제공, 투약관리, 구강간호						
8:40 ~ 9:20	인수인계	직원업무보고 및 전달 / 어르신들 휴식						
9:20 ~ 11:30	위생 신체 건강관리	목욕, 체조 물리치료	목욕, 체조 물리치료	목욕, 체조 물리치료	목욕, 체조 물리치료	목욕, 체조 물리치료	직원 대청소	
								어르신 산책
11:30 ~ 12:00	식사준비	점심 식사준비(손씻기, 앞치마, 물컵, 양치물)						
12:00 ~ 13:00	점심식사	개인별 맞춤영양식 및 치료식 제공, 투약관리, 구강간호						
13:00 ~ 14:30	자유시간	어르신 TV시청 및 휴식, 해당어르신 물리치료						
14:30 ~ 16:00	오후간식	프로그램실 이동/ 간식 / 그룹별 프로그램 참여					TV시청 및 노래방 침실 말벗 진행 어르신 위생점검 (손톱/발톱)	
	프로그램	여가활동	인지기능	여가활동	인지기능	인지기능		
16:00 ~ 17:00	식사준비	어르신 TV시청 및 휴식, 저녁 식사준비						
17:00 ~ 18:30	저녁식사	개인별 맞춤영양식 및 치료식 제공, 투약관리, 구강간호						
18:30 ~ 19:30	청결관리	취침준비 및 청결관리						
19:30 ~ 20:00	자유시간	어르신 TV시청 및 개별 자유시간						
20:00 ~ 07:00	취침	어르신 취침						

7. 종사자 현황

종사자 및 자격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1급	작업치료사
1	1	5	4	47	1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촉탁의
1	1	6	1	1	2

8. 직종별 근무형태

직종	근무형태	근로시간	직종	근무형태	근로시간
시설장	주5일	9:00~18:00	작업치료사	주5일	9:00~18:00
사무국장	주5일	9:00~18:00	사무원	주5일	9:00~18:00
사회복지사	주5일	9:00~18:00	영양사	주5일	9:00~18:00
간호조무사	주5일	9:00~18:00	조리원	주5일	9:00~18:00
요양보호사	푹당당	9:00~익일9:00	위생원	주5일	9:00~18:00
촉탁의	월2회		관리인	주5일	9:00~18:00

9. 노인학대예방 정보.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기억해주세요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10. 코로나 대응 현황

단계 구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상 황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면 회		비접촉 면회 실시				면회 금지
자원봉사		자원봉사자·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				
이용 시설 운영	운영	정상 운영				운영 중단 권고 ※긴급돌봄서비스 시행
	주의 사항	1) 이용시설 차량내 손소독제 구비 및 승차·하차시 손소독제 사용 2) 시설 이용시에는 행동장애 및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3) 이용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시 4㎡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				

